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57
----------	-----------

제출연월일	2006. 11. .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과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
- 나.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정함(안 제3조)
- 다. 민법 제43조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출연 및 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4조)
- 라.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 위탁 시 수반되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민법 제43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나.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06.10.2~2006.10.18)결과 : 의견제출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과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재산출연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민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연구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